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대형 승합자동차 차량운행제한 안내(신월여의지하도로,서부간선지하도로)

1. 전세연 제2023-123호(2023.10.25.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에서는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, 대형 승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,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여 연합회 요청으로 지하도로 진입 전방에 진입불가 안내표지 및 진입제한 구조물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.
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하도로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차 안내하오니,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`23.10.22(일) 18시 30분경 서부간선지하도로(금천IC방향)에서 전세버스 끼임사고 발생

※ 서전버조 대 23- 206호(2023.10.26)

4. 아울러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 방

지를 위해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“**전세버스 진입금지**” 내용 및 네비게이션(T
맵, 카카오맵 등) 사용시 차종설정을 승용차에서 “**대형승합**”으로 설정하여 운행할 수
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운행제한 도로명 : 신월여의지하도로, 서부간선지하도로

나. 운행제한 차량 : 높이 3.0m 초과차량,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차량,
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

다. 처벌규정 : 도로법 제113조 및 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

※ 붙 임 :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도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206호 (2023.10.26.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